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05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질병관리수준 우수 농가·마을에 대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 ...	2
2. 질병 반복 발생 농장·지역에 대한 컨설팅 및 경비 지원 신설 ..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도구 구입과 관리·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 (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질병관리수준 우수 농가·마을에 대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안 제18조제2항)

개정안은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을 상대로 한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를 현행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질병관리수준 우수 농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 방역 역량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3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의 전반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의 전환을 중장기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음.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제18조¹⁾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외부방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내부방역·방역의식 영역의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농장(1~2등급)에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관리용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 축종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임.

동 사업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고 전 축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방역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행 "일부"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질병 반복 발생 농장·지역에 대한 컨설팅 및 경비 지원 신설(안 제18조제3항)

개정안은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지역을 대상으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시설·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25~2026년 동절기에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첫 발생하였고, 국내 최초로
3가지 유형(H5N1·H5N6·H5N9)의 혈청형이 검출되는 등 발생
규모와 방역 여건이 예년에 비해 악화되는 추세임.

특히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생
농장의 상당수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고 있어,
반복 발생 농장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방역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농장·지역의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주변 농가로의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²⁾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이라는 기준과 실질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이 높아, 동일 지역·농가에 대하여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중점방역관리지구 제도는 해당 지역 내 사육자에게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육제한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사육자가 방역시설을 갖추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인 반면, 개정안은 반복 발생 농장·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예찰(豫察)·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 부과 없이 전문가 컨설팅, 이행계획 수립, 경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중심의 제도로 볼 수 있음.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동일 농가에 함께 적용될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제도상으로는 의무를 부과받으면서 비용의 일부만 지원을 받고, 개정안에 따라서는 별도 의무 없이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규제와 지원이라는 상반된 방향의 정책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여 농가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제도가 지역 단위의 전반적인 방역 위험 관리와 의무 이행을 담당한다면, 개정안은 반복 발생 농가의 방역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두 제도가 혼란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구분하거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중복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비교 】

	개 정 안	중점방역관리지구
적용기준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대상 질병	질병	제1종 가축전염병
의무부과	없음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의무, 방역교육 이수 의무
사육제한	없음	필요시 사육제한 명령 가능
경비 등 지원	컨설팅, 이행계획 수립, 방역시설·장비 구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지구 지정 전부터 사육 중인 기존 사육자에 한하여 방역시설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둘째,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질병"의 범위가 불분명함.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질병"이 방역 조치의 강도가 가장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한정되는지, 제2종·제3종 가축전염병까지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지원 대상의 범위와 예산 소요가 "질병"의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에 대상 질병의 범위를 명시하거나 하위법령 정비 시 그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재 지원 대상은 질병의 반복 발생 원인이 농가의 방역

소홀에 기인한 것인지, 지리적·환경적 요인 등 농가의 통상적인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작용하여 자율방역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미이행 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이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역(逆)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역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평소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반복 발생 농장 및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개선 강화로 가축전염병 대응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반복 발생 농가 지원에 대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가”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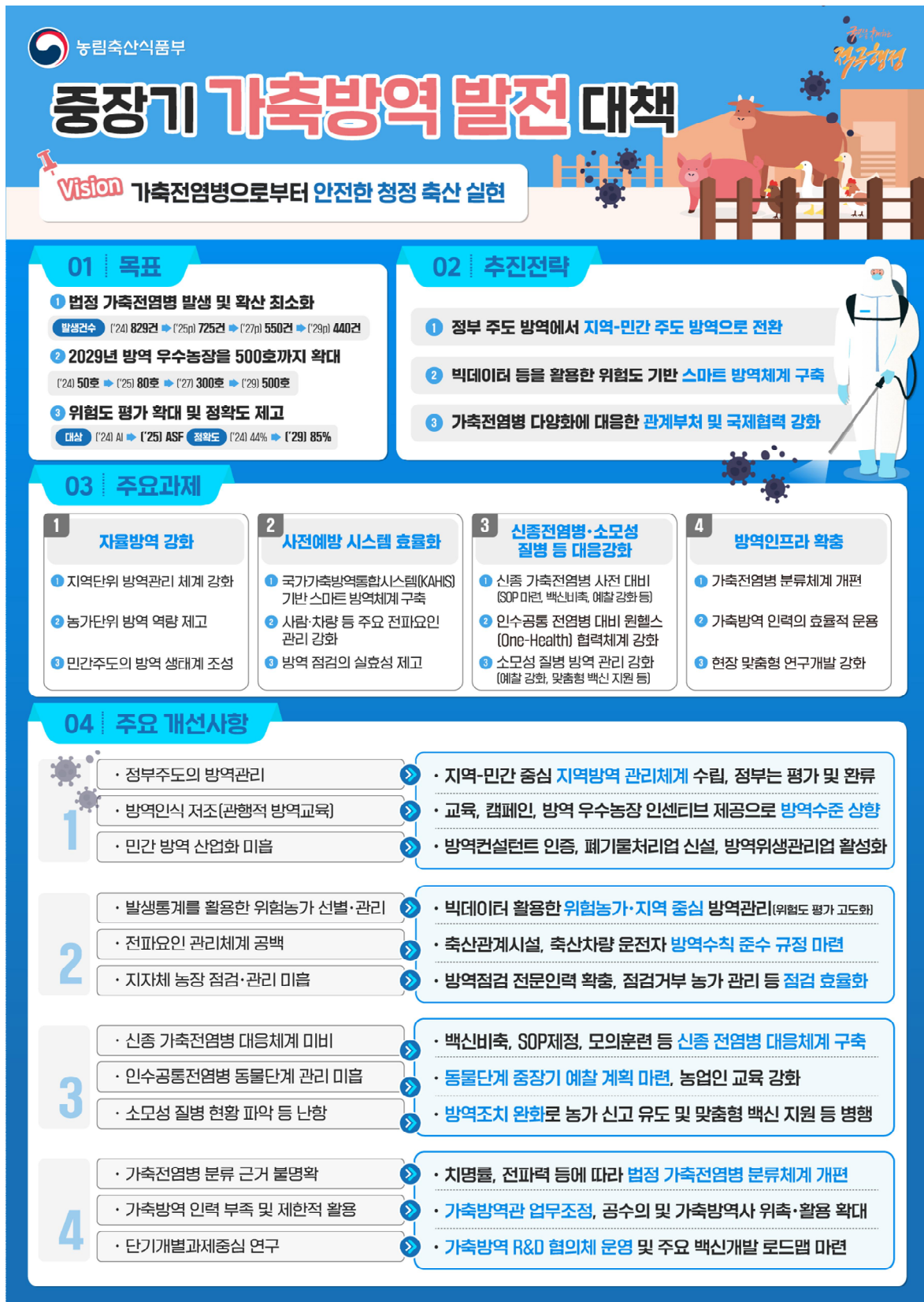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생 략) ② <u>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③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을 상대로 소독 등 가축질병관리-----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방역 및 사육환경-----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시설·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개선-----일부 또는 전부를-----.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 및 필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2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도입 배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규모와 확산 속도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농장 단위의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21~)' 참여 저조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

□ 사업 내용

- **(평가체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부방역(출입통제, 소독설비 등)·내부방역(축사 출입통제, 위생관리 등)·방역의식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1~4등급) 부여, 1~2등급 농장을 우수농장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방역관리 물품 :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 방역 조치 완화 : 일시이동중지명령·예방적 가축처분 대상 제외
 - 보상금 경감 :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5~10% 경감
 - 정책적 우대 : '27년부터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 추진 일정

- 신청·현장 평가(4~7월) → 결과 통보 및 대상 농가 선정(8월) → 방역물품 지원(8~12월)

□ 향후 계획

- ('26) 산란계 → ('27) 산란계(종계 추가)·대규모 양돈 → ('28) 대규모 가금·종돈 → ('29) 한우 → ('30) 전 축종 단계적 확대(신청 농가 대상)